



프랑스의 역사건축물에 관한 법 제도

정보신청기관 : 국토연구원

I. 머리말

프랑스에서 역사건축물이란 건축술과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분류 및 등록된 건물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건축물에 관련된 예술과 역사가 그 보호대상이며 건축물은 공익지역(Servitude d'utilité publique)¹⁾을 구성한다. 프랑스의 역사건축물에 관한 법 제도는 크게 건축문화유산과 관련된 법률과 행정명령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법률과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문화유산과 관련된 법률

- 문화재법전(Code du patrimoine)

- 역사건축물법(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
- 문화예술 조세지원법(Loi n°87-571 du 23 juillet 1987 sur le développement du mécénat)
- 문화유산 기금법(Loi n°96-590 du 2 juillet 1996 relatif à la foundation du patrimoine)
- 도시혁신과 도시연대에 관한 법(Loi n°2000-102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 Loi SRU)
- 역사적·미학적 건축물의 보호와 부동산 복원에 관한 법(Loi n°62-903 du 4 août 1962)



1) "공익지역(Servitude d'utilité publique)"은 프랑스 도시계획법전(Code de l'urbanisme) 제L.126-1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부속되는 행정지역을 일컫는다. "공익지역(Servitude d'utilité publique)"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① 역사건축물 및 유적지와 같은 문화유산 보호지역;
- ② 특정자원과 설비의 이용에 관한 지역;
- ③ 국방에 관련된 지역;
- ④ 공공위생과 공공질서에 관한 지역.

relative à la protection du patrimoine historique et esthétique de la France et à la restauration immobilière)

-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국가간 권한 배분에 관한 법(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 조경 보호와 개발에 관한 법(Loi n°93-24 du 8 janvier 1993 sur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es paysage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en matière d'enquêtes publiques).

2. 건축문화유산과 관련된 행정명령

- 역사건축물 국가위원회에 관한 명령(Décret n°2007-612 du 25 avril à la Commission nationale des monuments historiques)
- 역사건축물과 건축·도시·조경 문화유산 보호지역에 관한 명령(Décret n°2007-487 du 30 mars 2007 relatif aux monuments historiques et aux zones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 역사건축물 소유권의 지방자치단체에로의 이전에 관한 명령(Décret n°2005-836 du 20 juillet 2005 pris en application de l'ar-

ticle 97 de la loi n°2004-809 du 13 août 2004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locales et relative aux conditions de transfert de la propriété de monuments historiques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고고학지역으로 분류 및 등록된 부동산 또는 국가소유 동산의 Corse에로의 이전에 관한 명령(Décret n°2003-1111 du 18 novembre 2003 relatif au transfert à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de la propriété d'immeubles classés ou inscrits, de sites archéologiques et d'objets mobiliers appartenant à l'Etat, pris en application de l'article 9 de la loi n°2002-92 du 22 janvier 2002 relatif à la Corse)
- 문화유산·유적지 지역위원회와 공사허가에 관한 명령(Décret n°99-78 du 5 février 1999 relatif à la Commission régionale du patrimoine et des sites et à l'instruction de certaines autorisations de travaux)
- 역사건축물과 보호지역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n° 205-1128 du 8 septembre 2005 relative aux monuments historiques et aux espaces protégés)
- 보존지역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n° 2005-864 du 28 juillet 2005 relative aux secteurs suavegardés).

역사건축물 그 자체에 대한 보호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해당 건축물을 “역사건축물(Monument historique)”로 분류하는 것이며 둘째, “역사건축물” 명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건축물의 분류와 등록은 문화재법전 그리고 역사건축물과 건축·도시 조경 문화유산 보호지역에 관한 명령에 의해 규제된다(I. 협의의 역사건축물 보호).

또한 역사건축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역사건축물 주변지역(Abords du monument), 보존지역(Secteurs sauvegardés) 그리고 건축·도시·조경 문화유산 보호지역(Zones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ZPPAUP)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II. 광의의 역사건축물 보호).

II. 협의의 역사건축물 보호

역사적으로 건축적 및 예술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는 해당 건축물을 역사건축물로 분류하거나 역사건축물 명부에 등록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인

소유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단 역사건축물로 분류 및 등록되면 개인소유자가 임의로 자신의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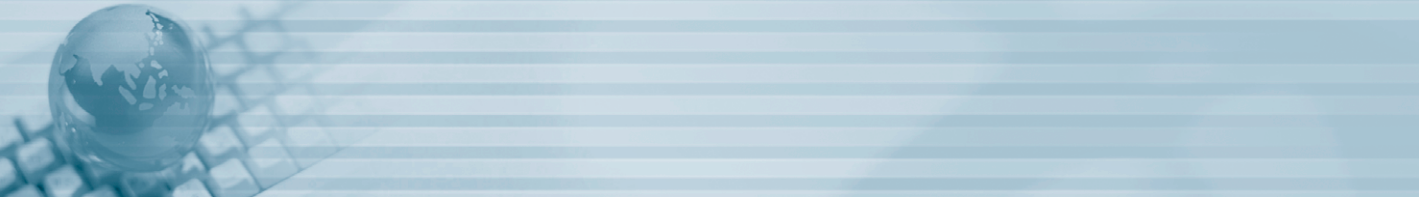
1. 역사건축물의 분류(Classement des monuments historiques)

역사 또는 예술 그리고 공공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보호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행정기관의 감독 하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역사건축물로 분류된다. “역사건축물”로 분류되기 위해서 당해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녀야 한다. 첫째, 거석 건조물 및 선사유적지가 포함된 토지 둘째, 역사건축물로 분류되었거나 분류를 위해 제안된 건축물을 격리시키거나 또는 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셋째, 역사건축물로 분류되었거나 분류를 위해 제안된 건축물의 가시 범주 내에 위치한 건물이어야 한다.²⁾ 아울러 부동산도 분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축물의 분류 절차는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내 건축문화유산 광역국(Service départemental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에서 개시되며, 분류 청구 주체는 관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가능하다. 따라서 건축물의 소유주도 역사건축물의 분류요청을 할 수 있다. 분류요청 서류는 문화부 내 문화지역국(Direction régional des affaires



2) Article L. 621-1 du Code du patrimoine.



culturelles) 직원이 담당한다. 서류는 당해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헌, 사진 그리고 지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역사건축물로서의 분류 대상에 따라 서류 심사 기관이 다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유적지 지역위원회(Commission régionale du patrimoine et des sites)가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동 위원회는 3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지사(Préfet de Région)가 위원장 직을 맡는다. 31인에는 문화부 문화지역국장(Directeur regional des affaires culturelles), 역사건축물 지역학예연구소(Conservateur régional des Monuments historiques), 지방의회 위원, 문화재 보호단체의 대표자 및 이외에 자격 있는 자가 포함된다.

그리고 동산의 경우 동산 광역위원회(Commission départementale des objets mobiliers)가, 특히 교회의 파이프 오르간의 경우에는 역사건축물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monuments historiques)가 분류 요청 서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국가 또는 국가 영조물법인(Etablissement

public de l'Etat)에 속하는 부동산은 문화 담당 부처의 시행규칙(Arrêté)³⁾에 의하여 역사건축물로 분류된다.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법인에 속하는 부동산은 소유주의 동의를 있는 경우 문화담당 부처의 시행규칙(Arrêté)에 의해⁵⁾ 역사건축물로 분류된다.⁶⁾ 그러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사건축물 최고위원회(Commission supérieure des monuments historiques)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국사원(Conseil d'Etat)이 분류 여부를 결정한다.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영조물법인 이외의 개인 소유의 부동산도 소유주의 동의를 있으면 문화담당 부처의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역사건축물로 분류된다. 단 소유주의 동의를 없는 경우, 국사원(Conseil d'Etat)이 역사건축물 최고위원회(Commission supérieure des monuments historiques)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분류 요건을 규정한 명령(Décret)으로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역사건축물로 분류할 수 있다.⁸⁾

개인 부동산이 해당부처 직권에 의하여 역사건축물로 분류되는 때에는 그리고 그 분류로 인



- 3) Article 3 de la 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
- 4) Art. L. 621-4 du Code du patrimoine.
- 5) Article 4, alinéa 1er de la 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
- 6) Art. L. 621-5 du Code du patrimoine.
- 7) *Ibid.*
- 8) Art. L. 621-6 du Code du patrimoine.

해 소유주에게 직접적·실질적·명확한 피해(Préjudice direct, matériel et certain)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금이 지불될 수 있다. 손해배상금 청구는 분류명령(Décret)이 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주가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않을 시에는, 수용전담판사(Juge de l'expropriation)⁹⁾가 손해배상금을 결정한다.¹⁰⁾ 총리는 직권으로 개인 부동산을 역사건축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수용전담판사의 결정이 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류명령을 폐지하거나 부동산 수용을 개시하여야 한다.¹¹⁾

역사건축물로 등록된 건물에 대하여 허가된 유지·보수·복원 공사는 건물 소유주가 직접 선정한 건축사와 기업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역사건축물로 분류된 건물에 허가된 공사는 행정기관의 감독 하에 시행된다. 특히 해

당 공사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역사건축물 수석건축가(Architecte en chef des monuments historiques)¹²⁾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2. 역사건축물의 등록(Inscription des monuments historiques)

소멸 및 외부적 손상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분이 보존을 위해 충분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역사적 건축물로서의 즉각적인 분류 청구를 증명함이 없이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역사건축물 추가목록(Inventaire supplémentaire des monuments historiques)에 등록될 수 있다.¹³⁾ 행정기관의 결정에는 도지사(Préfet de Région)의 시행규칙 및 역사건축물 최고위원회가 등록을 제의할 때에는 문화담당 부처 장관의 시행규칙이 포함된다.¹⁴⁾



9) 수용전담판사(Juge de l'expropriation)란 지방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판사로서 주된 역할은 수용에 관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수용전담판사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용명령(Ordonnance d'Expropriation)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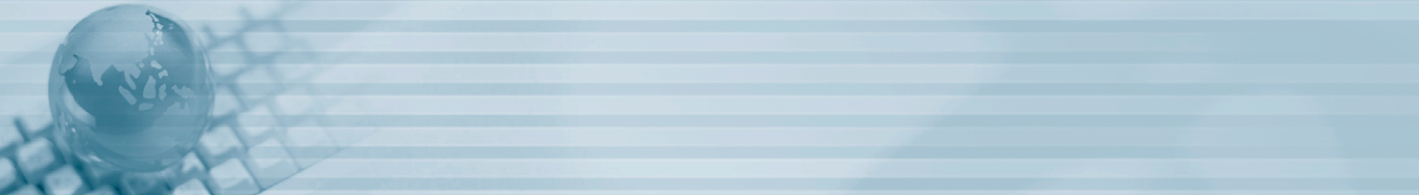
10) Art. L. 621-6 du Code du patrimoine.

11) *Ibid.*

12) 역사건축물 수석건축가(Architecte en chef des monuments historiques)는 역사건축물의 복원 또는 역사적·인류학적·미학적·조경적 가치 때문에 분류된 지역의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 건축가이다. 현재 프랑스에는 53명의 역사건축물 수석건축가가 있으며 주요한 업무는 역사건축물로 분류 및 등록된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부에 자문을 한다. 구체적인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재법전(Code du patrimoine) 제6부에 의해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축물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역사건축물 수석건축가는 역사건축물 최고위원회(Commission supérieure des monuments historiques)와 필요할 경우 문화유산·유적지 지역위원회(Commission régionale du patrimoine et des sites)에 참가하며;
- 역사보전 전문건축가(Architecte des Bâtiments de France)와 공동으로 보호되는 건축물의 위생상태를 감시하며;
- 역사건축물로 분류된 건물 소유자가 표명한 공사 제의에 대하여 견해를 제시하며 공사가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 국가의 재정지원 또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역사건축물 공사의 연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3) Art. L. 621-25 du Code du patrimoine.



건축물 또는 건축물 일부분이 역사건축물 추가목록에 등록되면 해당 소유자에게 통지된다. 소유자는 4개월 이전에 담당 기관에 해당 건축물 공사를 알리지 않으면 어떠한 변경도 건축물에 가하여서는 안 된다.

도지사(Préfet de région)는¹⁵⁾ 역사건축물 추가목록에 등록된 부동산 및 그 일부의 보존에 필요한 유지와 보수작업에 소요되는 실질 경비의 40%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다.¹⁶⁾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외에도 국가가 직접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지원 금액은 건축물의 특색과 현 상태, 계획된 공사의 성격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노력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된다.¹⁷⁾

3. 역사건축물의 비과세

역사건축물 소유자는 비과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즉, 총 순수입에서 토지적자(Déficit foncier)¹⁸⁾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적자 공제액은 10700유로로 한정된다. 그러나 토지적자가 역사건축물에 관련한 부담에서 발생

하였다면 토지적자 전액이 순수입에서 공제된다. 역사건축물에 대한 이러한 비과세 방식은 다음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1) 소득이 없는 역사건축물

역사건축물이 어떠한 소득도 창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에 대한 소유주의 점유 여부 그리고 건축물의 일반인에 대한 공개 여부에 상관 없이, 총수입으로부터 토지세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 문화재 담당 행정기관에 지불되는 분담금;
- 보수 및 유지공사의 비용 전액;
- 보통법(Droit commun)제도에서의 토지세 전액.

그러나 역사건축물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느냐 공개되지 않느냐에 따라 토지세 공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역사건축물이 4월부터 9월까지 50일 이내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40일 이내로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100% 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0% 토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4) Article 2, alinéa 6 de la 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

15) Article 2, alinéa 9 de la 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 l'article 2 du décret n°69-131 du 6 février 1969.

16) Art. L. 621-29 du Code du patrimoine.

17) Article 44 Décret n°2007-487 du 30 mars 2007 relatif aux monuments historiques et aux zones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18) 예컨대, 건물 소유주가 자신의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건물의 보수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건물소유자가 예상하였던 임대소득을 초과할 수가 있다. 이 때 건물소유주는 토지적자(Déficit foncier) 상태에 놓이게 된다.

(2) 소득이 있는 역사건축물

역사건축물 소유주가 동 건축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소득과 총수입에 대하여 토지세가 공제된다. 그러나 임대되지 않은 역사건축물이 유료 입장료로 소득을 창출할 때에는 종업원 임금과 그 외 비용을 공제한 후에 일반법(Droit commun)에 따른다. 역사건축물이 정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2290유로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소득이 있고 소유주가 점유한 역사건축물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역사건축물의 일부분에 대한 토지세는 총수입에서 공제된다. 하지만 관람과 관련된 다른 세 부담은 부동산 순소득을 정하는 데에 고려된다. 한편,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총 수익에서 공제된다.

(4) 상속세

역사건축물의 상속자가 증여자의 가족이 아니라도 상속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문화부와 재정부 그리고 상속자와 증여자 및 유증수혜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Ⅲ. 광의의 역사건축물 보호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역

사건축물로 분류 및 등록하여 해당 건축물 자체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 이외에도 주위 환경을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역사건축물과 관련한 보호지역으로써 역사건축물 주변환경(Abords du monument), 보존지역(Secteurs sauvegardés) 그리고 건축·도시·조경 문화유산 보호지역(Zones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ZPPAUP)이 설정되어 있다.

1. 역사건축물 주변환경(Abords du monument)

2000년 도시혁신과 도시연대에 관한 법은 역사건축물의 가시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기타 공사 계획과 관련하여 감시제도를 갖추고 있다. 즉, 종래에는 역사건축물로 분류 및 등록된 건물의 보호지역이 반경 500m이었다.¹⁹⁾ 그러나 2005년의 문화재와 보존지역에 관한 법률명령으로, 지방도시계획의 구상 및 변경 시 건축물을 보호하고 그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의 합의 하에 기존의 500m 보호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문화재와 보존지역에 관한 법률명령은 구획 결정에 있어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500m 구획 초과시 그리고 구획의 변경 시 기초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하



19) 500m 경계는 문화재법 제 L. 621-2조에 규정되었으며 2005년 법률명령(Ordonnance n° 205-1128 du 8 septembre 2005 relative aux monuments historiques et aux espaces protégés)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국사원(Conseil d'Etat)이 명령(Décret)으로 최종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500m 보호지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와의 합의로 정하여진 500m이상 확대된 보호지역 내에서 계획되는 모든 건설, 복원 및 파괴는 역사보전 전문건축가(Architecte des Bâtiments de France)²⁰⁾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보존지역(Secteurs sauvegardés)

보존지역(Secteurs sauvegardés)이란 완성된 건물 및 미완성된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역사적·미학적 특징으로 인해, 해당 건축물의 보존·복원·개발 시 특정 규칙에 따라야 하는 도시지역을 말한다.²¹⁾ 특히 프랑스 도시 내의 대다수의 역사지역이 보존지역에 해당한다. 보존지역은 1962년 역사적·미학적 건축물의 보호와 부동산 복원에 관한 법에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도시계획법전(Code de l'urbanisme)에서 규제된다. 동 법의 목적은 첫째, 법적 보호조치

를 마련함으로써 역사적 거리에서의 소멸 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피하는 것이며 둘째, 역사·건축·도시 문화유산을 확인하고 고주택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보존지역에서 도시정비 프로그램은 보존·개발 계획(Plan de sauvegarde et de mise en valeur, PSMV)에 의해 관리된다. PSMV는 사유지와 공유지 전체를 규제한다. 따라서 보존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모든 내부 및 외부 공사는 행정기관의 허가대상으로서 서면으로 청구되어야 하며 역사보전 전문건축가(Architecte des Bâtiments de France)의 견해를 수렴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구상하는 PSMV는 보존지역 지방위원회(Commission locale des secteurs sauvegardés), 당해 기초자치단체 의회 그리고 보존지역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secteurs sauvegardés)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으로 PSMV는 공청회를 거쳐 부처간 시행규칙(Arrêté interministériel)으로 결정된다. 당해 기초자치단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20) 역사보전 전문건축가(Architecte des Bâtiments de France)는 국가건축사·도시계획사(Architecte et urbaniste de l'Etat)중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 프랑스 최고의 공무원이다. 약 280명의 국가건축사·도시계획사 중 국가도시계획사가 110명 그리고 역사보전 전문건축가가 170명이다. 역사보전 전문건축가는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내 건축문화유산 광역국(Service départemental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관련 부처에 파견되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역사건축물의 주변지역, 유적지, 보존지역 그리고 도시·조경·건축 문화유산보호지역과 같은 지역의 관리;
- 역사건축물로 분류된 건축물의 유지;
- 국가 건축물 관리인;
-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의 관리 및 대중교육과 홍보.

21) Art. L.313-1, alinéa 1er du Code de l'urbanisme.

는 국사원(Conseil d'Etat)이 명령(Décret)으로 최종 결정한다.

3. 건축·도시·조경 문화유산 보호지역(Zones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ZPPAUP)

건축·도시·조경 문화유산 보호지역(ZPPAUP)은 1983년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국가간 권한 배분에 관한 법에서 만들어 진 후 1993년 조경 보호와 개발에 관한 법에서 확대되었다. ZPPAUP는 역사건축물 주변과 미학적·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이유로 보호하거나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에서 형성된다. 건축·도시·조경 문화유산 보호지역(ZPPAUP)은 종래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가 담당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간 협력체(E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의 장의 소관사항이다.²²⁾

역사보전 전문건축가와 문화부 건축문화유산 광역국과 협력하여 지방의회가 건축·도시·조경 문화유산 보호지역(ZPPAUP)에 관하여 검토한다. 민의조사 후, 기초자치단체의 동의와 문화유산·유적지 지역위원회의 견해를 거쳐 도지사의 시행규칙(Arrêté du préfet de région)으로 ZPPAUP와 그 구역이 확정된다. 일정 지역에서

의 ZPPAUP 검토는 반드시 공표되어야 하며, ZPPAUP를 설정하는 행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 게시판과 둘 이상의 지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 ZPPAUP 설정을 위한 심리절차는 평균 3년 내지 4년이 소요된다.

건축·도시·조경 문화유산 보호지역(ZPPAUP)에서의 벌채, 건물의 신축·과파·개조 또는 건물외관의 변경을 위한 모든 공사는 특별한 허가의 대상이 된다. 공사의 허가 여부는 역사보전 전문건축가의 견해를 수렴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결정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과 역사보전 전문건축가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유적지 지역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다. 일단 ZPPAUP로 설정이 되면 ZPPAUP 내에서는 모든 광고가 금지되며 건축 높이가 제한 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분류 및 등록된 지역별 역사건축물의 수

지역별(Région)	분류	등록	합계
Alsace	353	1020	1373
Aquitaine	737	1963	2700
Auvergne	639	1543	2182
Bourgogne	808	1355	2163
Bretagne	1119	1849	2968
Centre	831	1847	2678
Champagne-Ardenne	651	765	1416
Corse	124	142	266
Franche-Comté	286	946	1232
Ile-de-France	1115	2648	3763



22) Article 29 de l'Ordonnance n° 205-1128 du 8 septembre 2005 relative aux monuments historiques et aux espaces protégé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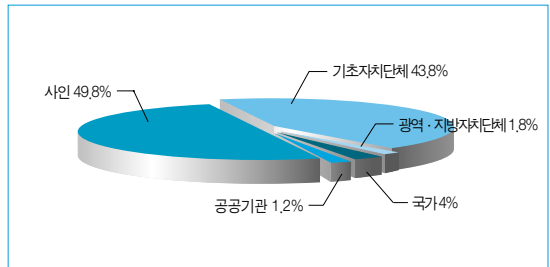
Languedoc-Roussillon	599	1338	1937
Limousin	310	683	993
Lorraine	647	972	1619
Midi-Pyrénées	853	1719	2572
Nord-Pas-de-Calais	418	913	1331
Basse-Normandie	593	1196	1789
Haute-Normandie	352	766	1118
Pays-de-la-Loire	656	1345	2001
Picardie	694	845	1539
Poitou-Charentes	767	1356	2123
Provence-Alpes-Côte-d'Azur	868	1275	2143
Rhône-Alpes	800	1585	2385
Guadeloupe	26	40	66
Martinique	18	61	79
Guyane	24	55	79
Réunion	20	109	129
총	14308	28336	42644

〈출처: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Direction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토목공학	3051	5,43%
정원 건축물	3461	6,16%

〈출처: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Direction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2006년 12월 31일 현재 역사건축물 소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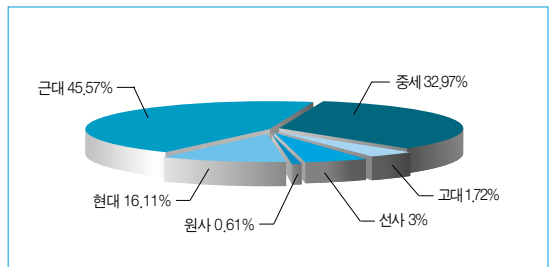


〈출처: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Direction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2006년 12월 31일 현재 분역사건건축물로 분류 및 등록된 건축물의 유형

건축유형	역사건축물의 분류·등록	퍼센트
도시계획	318	0,56%
중교건축물	16710	29,76%
장례·추모·봉헌 건축물	2614	4,65%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건축물	894	1,59%
사법부·형무소·경찰서 등의 경찰서	300	0,53%
금융 건축물	173	0,30%
병원 및 사회보호시설 건축물	447	0,79%
학교 건축물	374	0,66%
연구·문화·여가·스포츠 건축물	895	1,59%
군사 건축물	3521	6,27%
주택 건축물	18657	33,23%
농업 건축물	2165	3,85%
상업 건축물	860	1,53%
가내공업 등의 영업용 건축물	684	1,21%
산업 건축물	1009	1,79%

2006년 12월 31일 현재 역사건축물 건설시대



〈출처: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Direction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IV. 맺음말

역사건축물(Monuments historiques)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확대되어 시대를 불문하고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를 갖는 모든 건축물 및 동산이 역사건축물로서 분류 및 등록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 호텔, 저택, 교회, 수도원, 정원, 선사시대 동굴, 식당 및 극장과 같은 상업적 목적의 건물 그리고 공장·역·선박·중기기관차와 같이 산업적 또는 기술적 특징을 갖는 건물도 역사건축물이 될 수 있다.

역사건축물로 일단 분류 또는 등록되면 건축물의 보전을 위해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으며 복원 공사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역사건축물은 조세 혜택을 누리며 역사건축물 주변환경에 대

하여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

정 영 진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